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4호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현행 조례 제15조제7항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
및 정산이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
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'사업비 정산의 검사'를 의미하

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'회계감사'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'사업비 정산 검사'에 대해서도 위 법령과 동일하게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결산서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적합한 확인 및 검증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